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항공·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패러글라이더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052호, 2024. 1. 16. 공포, 2025. 1. 17. 시행)됨에 따라 위탁기관 및 위탁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사고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의 근거조항 명확화(안 제2조제1항)
- 나.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사고조사 정보의 범위 명확화(안 제8조)
- 다.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의 위탁 기관, 위탁 범위,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보·보고 의무 등(안 제8조의2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'25년 예산(안)에 위탁사업비 반영 추진 중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조”를 “제13조”로 한다.

제8조제5호 중 “조종실의 영상기록”을 “비행이미지기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초안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업무의 위탁) ①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1. 법 제17조에 따른 사고 발생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
2. 법 제18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개시에 관한 업무
3.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
4.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업무
5. 법 제22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
6. 법 제23조에 따른 검시·검사·분석·시험 및 전문가·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업무
7. 법 제24조에 따른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업무

8. 법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송부에 관한 업무. 다만, 법 제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의결 및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명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직접 재조사로 결정된 사항과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9.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·건의 및 조치계획·결과 통보의 수리에 관한 업무
10. 법 제27조에 따른 사고조사 재개에 관한 업무
11.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기법의 개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에 관한 업무
- ②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,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.
- ③ 법 제33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분과위원회의 구성 등) ①	제2조(분과위원회의 구성 등) ①-			
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-----			
1.·2. (생략)	----- 제			
② ~ ⑥ (생략)	13조-----			
제8조(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)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.	-----			
1. ~ 4. (생략)	-----			
5. <u>조종실의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</u>	-----			
6.·7. (생략)	-----			
<u><신 설></u>	-----			
<u><신 설></u>	-----			
	1.·2. (현행과 같음)			
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		
	제8조(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) -----			

	---. -----			

	1. ~ 4. (현행과 같음)			
	5. <u>비행이미지기록</u> -----			

	6.·7. (현행과 같음)			
	8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			
	<u>조사보고서의 초안</u>			
	제8조의2(업무의 위탁) ①위원회			
	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「항공			

안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초
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다음
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교통안전
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
공단(이하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
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1. 법 제17조에 따른 사고 발생
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
2. 법 제18조에 따른 사고조사
의 개시에 관한 업무
3.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
의 수행에 관한 업무
4.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단의
구성·운영에 관한 업무
5. 법 제22조에 따른 관계 행정
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
업무
6. 법 제23조에 따른 검시·검
사·분석·시험 및 전문가·
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업무
7. 법 제24조에 따른 관계인 등
의 의견청취에 관한 업무
8. 법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
보고서의 작성 및 송부에 관
한 업무. 다만, 법 제5조에 따
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의결 및
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명확

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직접 재조사로 결정된 사항과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9.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·건의 및 조치계획·결과 통보의 수리에 관한 업무

10. 법 제27조에 따른 사고조사 재개에 관한 업무

11.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기법의 개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에 관한 업무

②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,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.

③ 법 제33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해

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	
연 락 처	(044) 201 - 5449